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23년 04월 01일

신한BEST법인용MMFGS-1호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변영

| 항목  | 정정전   | 정정후  |
|---|---|--|
| 1.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<br>항반영 : 제17조(운용 및 투자제한)         | 제17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<br>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(이하 이 조에서 "안정적 자산 비중"이라 한다)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, 다음 각 호의 자산을 주로 취득하여야 한다.<br><생략>   | 제17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<br>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(이하 이 조에서 "안정적 자산 비중"이라 한다)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,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.<br><현행과 같음>  |
| 1.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<br>항반영 : 제17조의2 (선한매유인 관리조치)     | <신설>  | 제17조의2 (선한매유인 관리조치)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 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7-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br>②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 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.<br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 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,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.  |
| 1.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<br>항반영 : 제17조의2 (선한매유인 관리조치)<계속> | <신설>  | ④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 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(30%)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.<br>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.<br>⑥ 제5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 방안, 평가방법 변경(시가평가),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  |
| 1.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<br>항반영 : 제27조(투자신탁재산의 평가)        | 제27조 (투자신탁재산 평가)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한다.<br><신설><br><br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 | 제27조 (투자신탁재산 평가)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한다.<br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<br>③ 제2항에 따른 장부가격 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한다.<br>1. 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한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<br>2.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·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<br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| 1.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<br>항반영 : 제27조(투자신탁재산의 평가)<계속>    |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br>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(이하 이조에서 "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<br>⑦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br>⑧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|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br>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(이하 이조에서 "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<br>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br>⑧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 |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반영
- 2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 개정사항 반영
- 3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
-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
-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

| 항목  | 정정전   | 정정후   |
|---|---|---|
| 1.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                 |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br>나. 투자제한<br>(5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(이하 이 항에서 "안정적 자산 비중"이라 한다)이 <b>100분의 30 이하인 경우, 다음 각 호의 자산을 주로 취득하여야 한다.</b><br><생략> |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br>나. 투자제한<br>(5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(이하 이 항에서 "안정적 자산 비중"이라 한다)이 <b>100분의 30 이하인 경우,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.</b><br><현행과 같음>   |
| 1.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    | <신설>  | 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<br><b>(4) 선환매유인 관리조치</b>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 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7-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br>②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 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.<br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 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,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.   |
| 1.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<계속> | 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<br><신설>  | ④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 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(30%)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.<br>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.<br>⑥ 제5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 방안, 평가방법 변경(시가평가),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 |
| 1. 금융투자업규정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      | 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br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<br>(1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: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.<br>① 법 시행령 260조 3항에 의거,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<br><생략><br><신설>           | 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br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<br>(1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: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.<br>① 법 시행령 260조 3항에 의거,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<br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.<br>③ 제2항에 따른 장부가가격 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합니다.<br><b>1. 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</b><br><b>2.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·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</b><br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|
| 2.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 개정사항 반영: 제3부 1. 재무정보                     | 제3부 1. 재무정보<br>가. 요약재무정보<br><주석 신설>   | 제3부 1. 재무정보<br>가. 요약재무정보<br>주석:<br>- 증권대차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 또는 비용<br>-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 거래비용  |
| 3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|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br>가. 운용전문인력   |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br>가. 운용전문인력<br>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3년 2월 28일)</b>   |
| 4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: 제3부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               | 제3부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br>가. 연평균 수익률(세전 기준)<br>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(세전 기준)<br>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| 제3부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br>가. 연평균 수익률(세전 기준)<br>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(세전 기준)<br>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<br>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3년 02월 28일)</b>   |
| 5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|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가. 회사개요<br>라. 운용자산 규모   |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가. 회사개요- <b>최근 현황 갱신</b><br>라. 운용자산 규모<br>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3년 2월 28일)</b>  |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

| 항목  | 정정전              | 정정후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|
| 1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<br>규모 업데이트: 운용전문<br>인력            |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| 운용전문인력<br>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3년 2월 28일)</b>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<br>실적 업데이트 등:투자실<br>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<br><b>최근 현황 갱신</b>          |